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

■ 최보운의원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92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안 제14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 서미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6.

다.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안 제14조)

가. 개정안 요지

- 정부가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u>지역별·성별·연령별</u>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 ----- ----- ----- ----- ----- <u>지역, 성별, 연령, 장애유무에 따른</u> -----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14조는 정부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지역, 성(性),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 유무도 인터넷 이용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86.0%로, 일반 국민(94.0%)에 비해 저조하며,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2021~2023년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연도	일반국민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2021	93.0	82.9	79.3	89.1	80.7	84.4	86.7
2022	93.0	85.5	83.7	90.5	84.3	87.1	88.8
2023	94.0	86.0	84.2	90.8	84.8	88.1	90.3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최근 유사한 취지에서 제정된 「디지털포용법」(2024.12.26. 본회의 의결, 2026.1.22. 시행)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디지털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¹⁾,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의 해소도 디지털포용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음.

- 또한, 동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²⁾, 해당 시책과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이용 시 장애 유무에 따른 이용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1)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230